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'22. 1. 13. 시행)에 따라 우리군 조례에서「지방자치법」을 인용하는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「지방자치법」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(안 제1조~제21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법」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○ 규제심사 : 미래전략담당관 협의
○ 성별영향평가분석 : 가족지원과 협의
○ 입법예고 :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제1항제4호에 의거 생략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
○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외 20개 조례에 적용된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